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인접하여 밀집한 지역을”을 “따른 상점가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중 “정부·서울특별시·마포구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19조”를 “제19조”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14일”을 “2개월”로 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일”을 “20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를 “제20조”로, “제29조까지”를 “제30조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55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및 지원자금 사용내역

제25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65조제7항 및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마포구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은 공동사업 등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제28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986호)를 폐지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점유하는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가 인접하여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p> <p>5. ~ 9. (생략)</p> <p>제10조(시장의 인정취소) ① 구청장은 영 제2조에 따른 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친다.</p> <p>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취소) 구</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u>따른 상점가를</u> ----- ----- ----- ----- ----- -----.</p> <p>5. ~ 9.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 </p> <p><삭 제></p>

구청장은 임시시장이 법 제14조제 1항의 개설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시시장의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정부 · 서울특별시 · 마포구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 3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22조(예산의 지원) ① ~ ③ (생략)

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5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생략)

② 상인회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제19조-----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예산의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2개월 -----

제25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20일 -----.

1. 법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제20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 까지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2.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신 설>

제28조(시설물의 철거)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시설물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시설물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인가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20조 -----
----- 제30조
까지-----

2. 법 제55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및 지원자금 사용내역

3. 법 제65조제7항 및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마포구로부터 비용을 지원 받은 공동사업 등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제28조(시설물의 철거) -----

----- 중소벤처
기업부장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손정우
연락처	02-3153-8584